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2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4. 6. 26.(목) 11:0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허원제 부위원장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2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1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성원보고해 주십시오.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총 31명이 신청하 였습니다.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4년 제2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 · 속기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23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과 <보고안건> 1건이 공개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 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보고안건>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 보고사항

가. 2013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가> '2013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 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2013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에 관한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는 방송법 제 98조제2항에 따라 2013년도 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을 공표하기 위함입니다. 공표 대상은 '13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지상파 53개사 등 전체 396개 방송사업자 중에서 재산상황 자료 를 제출한 364개 방송사업자가 되겠으며, 공표 내용은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가 되겠습니 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제출된 재산상황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방송시장입니다. '13년도 지상파, 종합유선(SO) 및 방송채널(PP) 등 전체 방송사업 매출은 12조 9,063억원으로 '12년도에 비해 6,33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점유율 역시 지상파와 SO 의 점유율은 감소한 반면에 PP와 위성방송의 점유율은 증가하였습니다. 지상파, 종합유선, 방송채널, 지상파DMB, 위성방송 각 방송사업자별 방송매출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 다. 당기순이익입니다. 전체 방송사업자의 당기순이익은 1조 1,293억원으로 전년 대비 7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방송사업자별 당기순이익 역시 <표>를 참고하 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수익원별 매출입니다. 광고매출, 홈쇼핑방송매출과 수신료매출이 약 70%를 차지하고, 그 외 프로그램 판매·제공매출 및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 및 협찬매출 등이 3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광고매출은 3조 4,763억원으로 전년 대비 863억원이 감소하였으 며, 홈쇼핑방송매출은 3조 4,145억원으로 전년 대비 3,85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신료매출 은 2조 1,591억원으로 전년 대비 16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수익원별 매출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재무현황입니다. '13년도 방송사업자의 전체 자산은 30조 5,151억원이며, 부채는 11조 2,535억원, 자본은 19조 2,616억원으로 모두 '12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각 방송사업자별 재무상태표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방송시장별로 매출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상파 방송시장입니다. '13

년도 지상파방송사업 매출은 3조 8,963억원으로 '12년도에 비해 74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KBS, SBS, 지역MBC와 지역민방의 방송매출은 감소한 반면 MBC와 EBS의 방송매출은 증가 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241억원이며 전년 대비 79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KBS와 EBS 는 각각 105억원, 4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MBC와 SBS 등 대부분 사업자의 당기순이익은 전 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각 지상파 방송사별 당기순이익은 <표>를 참고하십시오. 주요 수 익원별로 말씀 드리면 광고매출의 경우에는 방송광고시장 침체 및 경쟁사업자의 광고매출 증가로 전년 대비 1,158억원이 감소한 2조 675억원이었습니다. 수신료매출은 전년 대비 112 억원이 증가한 6,127억원이었으며, 재송신매출은 전년 대비 654억원이 증가한 1,255억원이었 습니다. 종합유선방송(SO) 시장입니다. 방송매출은 2조 3,792억원으로 '12년도에 비해 1,002 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대 MSO의 방송매출과 점유율은 모두 증가한 반면 개별SO는 감소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SO별 방송매출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당기 순이익의 경우 3,618억원이며 전년 대비 1,19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씨앤앰과 에이치씨엔 을 제외한 대부분의 SO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요 수익원별로 말씀 드리면 수신료매출의 경우에는 IPTV와 위성방송과의 경쟁에 따른 가입자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207억원이 감소한 1조 1,663억원이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홈쇼핑송출수수료 매출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534억원이 증가한 7,489억원이었으며, 단말장치대여(판매)매출은 전년 대비 582억원이 증가한 3,147억원이었습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PP) 시장입니다. 방송 매출의 경우에는 6조 756억원으로 '12년에 비해 5,63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방송채널사용 사업자별 방송매출은 <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홈쇼핑PP입 니다. 홈쇼핑시장 활성화로 인해 홈쇼핑PP의 방송매출은 전년 대비 3,857억원이 증가한 3조 4,145억원이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전문 ㈜홈앤쇼핑의 매출이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다음 은 10페이지입니다. 종편·보도PP입니다. 프로그램제공매출과 광고매출 증가 등으로 인해 종 편과 보도 PP의 방송매출은 888억원이 증가한 4.431억원으로 파악됐습니다. MPP입니다. 지 상파계열 11개 PP의 방송매출은 7,427억원으로 전년 대비 379억원이 증가하였고, 씨제이계 열 PP의 방송매출은 6,84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입니다. 전체 PP의 당기순이익은 5,736억원으로 전년 대비 2,56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 이지입니다. PP의 주요 수익원별 매출을 말씀 드리면 홈쇼핑방송매출, 광고매출, 프로그램제 공매출, 프로그램판매매출 및 협찬매출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광고매출은 전년 대비해 서 157억원이 증가한 1조 2,636억원으로 파악됐으며, 프로그램제공매출은 전년 대비 879억원 이 증가한 6,635억원, 프로그램판매매출은 전년 대비 184억원이 증가한 2,044억원이었습니다. 기타 위성방송의 경우에는 방송매출은 464억원이 증가한 5,457억원이었으며, 당기순이익은 726억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상파DMB 3사의 방송매출은 95억원으로 21억원이 감소하였으 며, 당기순손실도 28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후에 6월 말에 이 내용을 위원 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재산상황을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 산상황 요약본은 <붙임>으로 붙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O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의견 겸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전체 내용에 어떻게 정리가 됐는 지 모르겠는데 오늘 보고하신 내용 중에 2012년과 대비해서 2013년이 늘었다, 줄었다고 정 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인데 예를 들면 전체 방송매출이 2012년에 얼마였는데 '13년에 얼마 해서 얼마 늘었다.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 밑에 <표>를 만들어서 최근 5년 동안의 트렌드(trend)를 표시해 주면 더 분석하는데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 자별로 매출이 늘고 줄고, 또 수익원별로도 보면 방송광고매출은 지상파의 경우 많이 감소 되고 또 PP는 늘고, 그리고 수신료매출의 변동폭도 최근에 과거보다는 변동폭이 많지 않습 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앞으로 방송전반에 걸쳐 정책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시사하 는 바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몇 년 동안의 트렌드 분석을 같이 했으면 좋 겠고, 또 내용을 잘 분석해서 정책적인 시사점, 이런 것들을 분석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 다. 두 번째는 우리가 법에 의해서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하는 것 외에 방송시장경쟁상 황평가라는 것이 있고, 또 방송산업실태조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방송산 업실태조사는 방송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통계법에 근거를 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사내 용이 중복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적인 예로 공표시기를 보면 오늘 보고한 것은 매년 6월,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는 3월 이내, 그리고 방송산업실태조사는 매년 11월경 이렇 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조사대상 연도는 그 전년도로서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내 는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것도 동기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방송시장 내지는 방송사업자에 관한 일반적인 현황에 대 해서 이 3가지 조사를 통해 하고 있는데 통합적·종합적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방 송시장 현황이라고 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팩트에 관한 것도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그 팩트로 인해 우리가 어떤 시사하는 바가 있는지를 잘 분석하면 좋겠다는 것입니 다.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 제가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쨌든 이런 것들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아주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 같이 정부에서 정책이나 제도를 만드는데 활용이 될 수 있고, 학계나 연구계에서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인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 이것을 좀 더 분석적이고 입체적인 정리 내지는 분석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붙임>을 보니까 여기에는 일부 광고매출이나 또는 지상파 광고매출 부분에 대해서 5년의 상황을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자료들을 다른 부분에서도 분석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경향을 파악해서 저희 정책 반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O 고삼석 상임위원

- 일단 내용적인 것 하나 의견을 드리고, 그다음에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제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방송채널사용사업 시장과 관련된 현황입니다. 보시면 항상 제가 느꼈던 것이지만 방송법상 홈쇼핑이 PP로 분류되기 때문에 여기에 넣은 것입니

다만 실제로 어떤 문제가 지적이 되느냐 하면 착시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전체적으로 보 면 홈쇼핑PP 포함해서 PP시장의 매출들을 보면 PP시장이 상당히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 만 사실은 거기에서 절반 이상은 홈쇼핑의 매출이고 또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료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PP의 전체 방송매출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대부분 홈쇼핑입니다. 정책적으로 보면 물론 홈쇼핑의 매출이 일단 송출수수료나 이런 것으로 해서 유료방송시장 으로 분명히 유입이 돼서 방송시장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실제로 정책 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착시현상이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봤 을 때도 우리나라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시장은 분명히 커가고 있는데 비해 체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송채널사용사업 시장에서 별도로 분리는 쉽지 않겠지만 이 부분을 집계 하고 정리해서 보고하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첫 번째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도와 관 련해서 살펴보면 제가 안건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방송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현 황조사 이런 것들을 하는 목적이 4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정부의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그다음에 기 업의 경영전략 수립자료로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국민들에게는 산업에 대한 이해를 촉 진시키기 위한 자료로 활용이 되는데 아까 이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관련된 제도가 3개 있습니다.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그다음에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방송산업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체계적으로, 유기적으로 작업이 되고 있지는 않 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비교표만 보더라도 위원회가 하고 있는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내용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만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하고 있는 방송시장경 쟁상황평가는 경쟁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루고 있고, 미래부가 주관하 고 있는 방송산업실태조사는 더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보더라도 재산상황 공표 는 3,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경쟁상황평가는 2억 8,500만원이고, 그다음에 산업실태조사가 1억 6,000만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재산상황공표에 책정된 예산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즉, 적다는 것은 이것에 대한 실무선에서의 중요성이 낮게 인식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차원에서 여쭤 봅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그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별도로 없습니다만 반면에 경쟁상황평가는 외부전문가들 동원해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수집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드는 면이 있습니다.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3,000만원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방송사업자들에게 받은 재산상황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회계법인에게 용역을 의뢰해서 쓰는 그 정도의 돈입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O 고삼석 상임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쭤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현황조사나 그다음에 미래부에서 하고 있는 실태조사가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O 고삼석 상임위원

- 법적 근거에 의존하다 보니까 뭐냐 하면 방송시장에서의 트렌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OTT, VOD 서비스 등 이런 전반적 인 방송시장의 기술적 변화라든가 그에 따른 시장의 변화들을 적시에 우리가 포착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지금 저희들 계획은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하는 데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OTT 같은 새로운 기술도입에 따른 시장의 확장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선 방송시장으로 편입시킬 것인지 여부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VOD 시장 부분, 비실시간 부분의 방송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을 올해 많이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부분을 좀 더 전반적으로 제대로 발전시키면서 오늘 보고 드린 재산상황 공표 부분도 좀 더 거기에 맞게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은 자신들이 제출한 자료를 방통위가 회계검사한 결과입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회계검사까지는 아니고, 항목이 제대로 분류돼서 소위 말해서 빠진 것은 없는지의 단순한 정도이지 검증단계까지는 아닙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회계사나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검사하는 예산항목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000만원 정도로 해서 회계법인에게 검토를 의뢰하는 그 정도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어쨌거나 이것이 상당히 근거 있는 재산상황이겠지요. 방송사들이 그래도 2013년도에 다들 흑자를 내서 다행입니다. 특히 KBS의 경우 2012년도에 62억원 적자였다가 2013년도 작년에 43억원이 흑자입니다. 105억원이 흑자로 증가한 것인데 EBS도 적자였다가 작년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것이 경비절감이나 불용자산 매각이나 부동산 경기나 이런 경영실적일 수

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흑자로 돌아섰는데, 특히 KBS와 EBS는 수신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결과로 생각됩니다. KBS가 수신료 인상(안)을 내놓았을 때는 그 전년도가 적자였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적자상태였습니까? 방통위가 수신료 인상(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이 금년도 2월입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국회 제출은 3월 초이고, 위원회 의결은 2월 말이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때의 경영결과, 재산상황은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말씀 드리면 작년도는 흑자가 났지만 그 전년도에는 적자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가결산 형태로 해서 지난 1월 말에 받아서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 당시 수신료 부분을 검 토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일각에서 공영방송수신료평가위원회, 수신료를 인상하려면 정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객관적인, 독립적인 수신료평가위원회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영결과 반드시 적자가 났다고 해서 올려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영방송인데 적자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수신료를 올려주는 것이 좋겠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공정성·공영성을 평가받은 뒤에 사회적인 지지, 합의를 받을 수 있어야겠다는 것이 있지만 저는 KBS가 흑자로 돌아선 마당에 그 수신료 인상(안)을 그냥 그대로 지지해 주는 것이 옳은가 하는 회의를 갖습니다. 최근의 파업사태와 재난방송에서의 편향보도 말고도 이런 경영실적에 따른 수신료 인상방안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됐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가결산상태였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정도의 정보라고 할까, 경영상황을 알고 나서 수신료 인상(안)을 검토하는 것이 옳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답변 드리면 작년 12월 초에 KBS로부터 수신료 인상(안)을 접수한 후에 회계, 방송, 법률 분야 전문가들로 해서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12월 그리고 금년 1월, 2월 초까지 해서 지금 말씀하신 회계 부분 경영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검토하면서 검토의견을 도출해 갔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흑자 낸 것을 거꾸로 불리하게 써먹느냐는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경영과 재산상황으로 봤을 때 수신료를 올려주지 않으면 못 하겠다, 비명을 지를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감사원 감사 결과, KBS는 경영 합리화를 훨씬 더 체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인력구조와 고제작비와 아까 말씀 드린 불용자산과, 이런 것들을 경영합리화를 해서 자구책을 잘 만들어 내고 그래도 안 되면 이 정도 했으니까 수신료를 올려주어야겠다고 요청하는 것이 맞는 순서입니다. 그 순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느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우선 저 부분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이 방송매출로 인해 이익을 낸 것인지, 아니면 불용재산 매각과 각종 비용절감을 통해 수익을 낸 것인지는 확인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을 공표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다른 기회에 좀 더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O 허원제 부위원장

- 재산상황평가하는 것이 방송법에 근거해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은 방통융합시대인데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이 자료를 보니까 뭔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에 지상파, 종합유선(SO), PP, 위성방송만 나와 있으니까 일견 벌써 따지는 것이 IPTV의 경우에 사실상 방송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 방송법이 아니라 IPTV는 또 IPTV법에 의해 관리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상이 안 되니까 IPTV도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터넷, 모바일 쪽 시장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 상황이되다 보니까 우리가 방송시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60% 정도밖에 들여다 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은 방송법에 근거해서 이 자료를 만드니까 완전한자료가 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설사 그렇더라도 보조적으로라도 IPTV와 모바일, 인터넷 이런 쪽의 자료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IPTV는 IPTV법에 따라 영업보고서를 미래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제출된 영업보고서와 우리가 방송법에서 말하는 재산 상황 공표 부분과 요구하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 자료도 저희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IPTV는 일단 재산상황 공표의 대상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이나 모바일 쪽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방송과 방송의 융합시장 전체를 보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는,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측면에서 보는, 재산상황 공표 측면에서 보는, 그 문제는 접근해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시장을 어떻게 획정할 것인가부터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논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O 허원제 부위원장

- 어쨌든 지금 융합시대에 그 부분까지 우리가 포괄해서 시장을 들여다봐야 시장의 정확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KBS와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지금 수신료에 대한 인상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재원구조에 대한 시스템을 정상화시키자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인 KBS의 경우에는 수신료가 근간이 되는, 적어도 NHK

와 같이 100%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80%, 90% 이상은 수신료가 메인이 되는, 그렇게 해서 공영방송은 기업으로부터의 압력, 그다음에 정부로부터의 압력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방송을 만들자고 하는 그 취지에서 수신료에 기반하는 것을 만들자, 현재 상황의 수신료로서는 광고가 오히려 더 많은 포션(portion)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광고의 포션을 점차 줄여 나가고 수신료를 좀 더 확대시켜 나가자는 측면에서 수신료 인상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지상파는 광고, 또 일반 SO나 PP의 경우에는 수신료라든지 이런 재원구조 자체를 기본적으로 카테고리를 제대로 만들어서 정착시켜 주는 것이 각 방송의 발전을 위해 서로 상생할 수 것이다, 그것이 또 국제적인 기준과 틀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이해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더 없으시면…

O 고삼석 상임위원

- 한 가지만 더….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O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기회가 되면 한 번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수신료 문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 최성준 위원장

- 수신료 문제는 다음에 논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수신료를 논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요.

○ 이기주 상임위원

- 수신료를 이야기하면 저도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O 고삼석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양해하고 하나만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늦게 했는데 MBC를 보면 매출의 경우 본사는 증가했고 지역MBC는 감소했습니다. 순이익의 경우 본사나 지역 모두 감소했는데, 특히 지역의 순이익 감소폭이 상당히 큽니다. 제가 듣기로는 광고영업을 비롯해서 지역MBC의 매출이나 수익이 본사로 이전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들이 재산상황 분석을 통해 파악이 됩니까?

○ 김성규 방송시장조사과장

-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역MBC는 작년도와 비교해서 광고매출이 빠져서 그로 인해 재산상황이 악화됐다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것들이 본사 경영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지,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O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알기로는 광고는 결합판매에 따른 효과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MBC 본사가 증가한 만큼 지역MBC가 총액으로 감소했는데 이런 경우 본사와 자회사 간의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당한 매출이나 수익의 이전이라고 봅니다. 물론 아직 정확하게 보고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확인하고 이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본사와 자회사간의 불평등한 관계 때문에 경영실적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눈여겨보면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재산상황 공표에 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은 앞으로 재산상황 자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조사하자, 그리고 재산상황 공표를 할 때 이 자료를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자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신 의견들, 바로 이런 자료들을 활용하는 몇몇 사례를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유념해서 자료들이 통합적으로 작성이 되고 그다음에 그 자료를 통해 저희가 정책을수립하고 전체 방송시장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고 준비가되었으면 합니다. 이 공표에 관한 사항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접수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케이티의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14-24-082)

O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케이티의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입니다. 이건에 대해서 전차 회의에서 KT 측의 의견진술을 들은바 있는데 오늘 급히 금번 회의에서 추가로 의견진술을 하겠다고 요청해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나와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의견진술인지 현재 파악이 되지 않고, 오늘 의견진술하고자 예정되어 있는 분의 명단은 IT부문장과 CR부문장, 각 부사장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전에 출석하셨던 분보다는 상위직급에 계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의견진술 하겠다고 지금 밖에 출석해 있다니까….

○ 김재홍 상임위원

- 글쎄요. 의견청취와 청문절차가 법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청취는 본인들이 하겠다고

요청해 왔으면 행정청으로서는 들어주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충분히 했다고 생각되고, 그러나 오늘 또 와서 하겠다고 했으면 시간제한을 두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5분이나 7~8분 정도 의견진술을 듣기로 하고, 결론은 퇴장한 뒤에 회의에서 내는 것이니까 그렇게 어느 정도 제한하고 틀을 갖춰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오늘 부사장급 두 분이 나오신 것 같은데 아마 지난번 진술 이후에 뭔가 또 다른 의견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또 다시 진술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만 어쨌든 진술인의 의견은 우리가 충분히 들어주고 결론은 우리가 내면 되니까 진술인 의견을 우리가 굳이 제한하거나 배척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딱 시간을 정해서 몇 분 그러기보다는 제가 판단해서 지난번 자료도 다시 가져왔습니다만 지난번에 설명한 것을 반복하면 제가 중간에 그것을 제지하고 지난번과 다른 새로운 의견을 진술할 때는 그 진술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런데 지난번 의사진행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만 여기는 민사법정이 아닙니다. 행정청으로서 행정처분 전에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제한적인 의견진술이나 변 론처럼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신속한 행정처분 결정이 필요한 상 황이라고 봅니다. 이미 언론에도 보도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더 끈다면 오히려 피차에 좋지 않을, 오해를 받을 소지도 크고, 행정처분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제한을 가하는 것이 옳 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감안해서 제가 진술내용을 듣고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게 핵심적 인 내용만 진술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시지요.

(㈜케이티 측 의견진술인 입장)

앉으십시오. 먼저 참석하신 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KT에서 참석하신 IT부문장 김기철 부사장님, 나오셨습니까?

○ 김기철 ㈜케이티 IT부문장

- 예.

- 그다음에 CR부문장님인 전인성 부사장님 나오셨습니까?

○ 전인성 ㈜케이티 CR부문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조금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지난번에 오랜 시간에 걸쳐 KT의 의견진술을 청취했는데 오늘 그 의견진술을 또 하시겠다고 해서 기회는 드립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참석은 하지 않았지만 지난번에 어떤 내용을 진술했는지 다 알고 계시지요?

○ 김기철 ㈜케이티 IT부문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지난번에 진술된 것 이외에 새로운 내용에 대해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지난 번에 진술된 것과 같은 내용을 자꾸 진술하게 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지만 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전인성 ㈜케이티 CR부문장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전인성 부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인성 ㈜케이티 CR부문장

- 먼저 이렇게 다시 재차 진술할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저희가 해킹당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KT의 전 임직원들은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확충이나 조직 보강도 소요예산도 3%에서 10% 범위까지 끌어올려서 3년간 약 1,000억원 이상의 투자가 소요되는 그런 기반 확충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킹은 일반적으로 해커와 기업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한국에서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 전반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불법으로 정보를 해킹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나 환경이 한국에서는 만들어지고 있고, 또 이런 불법 해킹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됐지만 취약한 상황입니다. 불법 정보를 취득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개인이나 자영업자가 있고, 또 이런 자영업자와 개인과 연합해서 중국의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과도 연계된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도 우리가 한 번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는 고민을 해 봅니다. 지난번에 언급해 주셨던 마이올레 해킹과 관련해서는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왜 그것을 미리 탐지하고 방어하지 못했느냐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마이올레 해킹 건은 모의해킹 이런 건을 통

해 우리가 보완작업을 했으나 발생한 건이고, 또 침입방지시스템이나 방화벽을 설치해서 일 정한 보호조치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불가항력적으로 저희가 해킹을 당한 측면이 있음을 감히 또 말씀 드립니다. 금번 심의결과가 어려운 정보통신 사업환경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경쟁환경에 미칠 영향도 심대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신사업을 운영하면서 최근에 어려운 경영환경을 맞고 있고, 이러한 환경에도 영향 을 끼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점을 위원회에서 고려하셔서 미래지향적인 개 선을 유도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정보보호산업 쪽의 영향도 높이 고 여러 가지 대안도 갖추고 한국을 이끌어나가는 그런 정보보호기업으로서 거듭나겠습니 다. 전 임직원이 뼈를 깎는 자세로 이쪽에 보완도 하고 대책도 마련하고 실행을 하는, 그래 서 2년 전에 일어났고 이번에 일어났던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조치를 CEO를 중심으 로 전 임직원이 해나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저희의 통신사업 환경개선을 위해 서는 또한 2, 3가지 개선될 수 있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행 보호조치 고시 기준은 의무 범위가 모호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인 책임을 부 여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정보보호 관련 해킹기법이 현재 아주 다양하고 고도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아래에서 이 기준을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그런 처벌 환경은 글로벌 환경과도 다소 차이가 있음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참 아쉽고 안타깝지만 한 국의 어려운 통신사업 환경에서 서비스 경쟁과 통신망 품질경쟁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업 환경을 만들면서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통신사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저희 KT 는 다시 한 번 거듭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자리를 주신 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 러 위원님들, 사무국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서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의견진술인에게 확인 하실 내용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철 ㈜케이티 IT부문장

-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간단히 말씀하시지요. 김기철 부사장님!

○ 김기철 ㈜케이티 IT부문장

- 사실은 저희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끼고 있는 부분이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이 정보보호 문제가 떠오르고 있는데, 의외로 사회에 이것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굉장히적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만약 이번에 저희에게 다시 한 번 정보보호 분야에서 기여할 수있는 역할을 주신다면 무엇보다도 정보보호인력의 육성이라고 할까, 정보가 유출됐을 때의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사회적으로 많이 제거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또 투자가필요하면 투자를 포함해서 저희가 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케이티 측 의견진술인 퇴장)

이렇게 관계자에 대한 의견진술을 마쳤습니다. 지난번에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 고시 위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혹시 그 내용 중에 추가로 더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이어서 행정처분 방안까지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서 2페이지는 지난번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고서 3페이지 조사의 위법성 판단 및 처분방향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의 박스는 생략 하고, 마이올레 홈페이지 관련해서 이용자 홈페이지 접속 후 "요금명세서 조회" 시 접속한 이용자와 고객서비스계약자번호의 본인 일치여부 인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는 '정보통신망법'제28조제2호(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 그 이하는 '시행령', '고시'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래 박스를 보시면 지난번 ㈜케이티가 진술할 때 마이올레 홈페이지의 웹서버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되지 않 는다는 방통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한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마이올레 홈페이지의 웹서버는 이용자의 요금명세조회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DB와 상시적으로 연동되어 PC 등 이용자 단말기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시스템 간 오고가는 데이터를 매 개·처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 박스를 보시면 금번 해킹기법인 '파라미터' 변조행위와 관련 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다는 의견을 KT가 제시한바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진 술헸지만 불가항력적이다, 보호조치 규정이 애매모호하다, 포괄적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현 재까지 밝혀진 해킹기법이나 개인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취약점만도 수십~수백 개가 존재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새로운 취약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이를 일일이 고 시나 해설서에 명시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생각을 말씀 드리겠 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행정처분은 이러한 이용자의 고객서비스계약번호의 일치여 부 미확인은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 위반으 로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 유출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법 제64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및 제64조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비정상 접속 관련해서는 3개월간의 웹서버 접속 기록을 조사한 결과, 특정 IP로 총 1,266만여 건이 접속되었고, 1일 최대 34만여 건의 개인 정보를 조회했지만 이를 탐지·차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정보통신상 제28조제1항제 2호(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 자체는 개인정보 유출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동법 제64조의3에 따라 1억원 이하 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조치 명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불필요한 개인정보 전 송 관련해서도 이용요금의 명세조회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예: 이전 통신사명, 개통 대리점, 장애인 여부 등)까지 포함되었으며, 주민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에 대

해 마스킹 처리 등 보호조치가 미비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정보통신망 제28조제1항 제6호를 위반한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는 법령상의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선권고 조치 토록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올레클럽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올레클럽 (point.gook.co.kr;100) 홈페이지는 고객 포인트를 조회하는 홈페이지인데 ㈜케이티의 고객센 터 등 인가받은 개인정보취급자만 사내망을 통해 접근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 커가 외부 인터넷망으로 접속을 한 상황입니다. 이것 역시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접근을 탐지·차단하지 못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동법 제64조의3과 같이 1억원 이하의 과징금 그리고 시정조치 명령이 필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계정 관리 취약과 관련해서는 사용 중지된 '퇴직자의 ID'로 총 2,753번이나 접속해서 80,000여 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 법 제28조제1항제2호(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케이티의 의견진술 때 아래 박스에 보시다시피 단순한 타인의 개인정보 조회도 누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개인정보의 누출은 해당 정보의 탈취·복사·저장 뿐만 아니라 권한 없는 자 또는 권한을 넘어선 단순조회도 누출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커가 조회한 내용은 불법에 해당되며, 그다음에 해커가, 조회한 내용을 불법 TM에 활용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도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누출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는 상당한 인과관계도 있다고 봐서 위와 같이 1억원 이하의 과징금, 그다음에 시정조치 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 페이지입니다. 암호화 통신 관련해서 올레클럽 홈페이지(point.qook.co.kr;100)의 개인정보 전 송구간에 암호화기술을 미적용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 1항제4호(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개인정보 전송 시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4호(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위반이나, 이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동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KT 유선계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는 지난번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는 앞서 말씀 드린 기술적·관리적 보 호조치 위반사항을 <표>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 아래 행정처분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8페 이지입니다. 과징금 부과는 7,00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제2호(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 위반행위로 인해 개인정보가 누출되었기 때문에 동법 제64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 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의 '매우 중대', '중대', '일반 위반행위' 이렇게 3가지로 나누고 있 는데 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이득을 취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 7,0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과태료는 1,500만입니다. 기준금액은 위반횟수별 과태 료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 이 없기 때문에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적용하고, 그다음에 아래 박스 밑에 가중금 액을 보시면 위반행위가 2개, 기간통신사업자임을 고려해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인 500만 원을 가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가중해서 1,500만원의 과태료를 산정하게 되었 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시정조치 명령입니다. ㈜케이티의 정보통신망법 제28제1항 제2호 및 제4호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 부과가 가능합니다. ㈜케이티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서는 아니되며, 위반사항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7월 25일까지 제출토록 시정명령을 내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개선 권고는 ㈜케이티에 대하여 이용자의 요금명세 조회와 관련 없는 불필요/과다한 개인정보를 전송한 행위와 이름, 주소 등 주요 개인정보를 마스킹 처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는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아래 종합의견은 과징금 7,000만원, 과태료 1,500만원, 기타 시정조치 명령, 개선 권고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지난번에, 가능하면 12시를 넘어서 많이 진행되리라 예상될 경우에는 일단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12시가 지났고, 지금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1시 30분경에 속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그냥 진행하기를 희망하시면 그냥 진행해도 됩니다. 아니면….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속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O 고삼석 상임위원

- 저도 약속이 없어서 속행이 가능합니다만 나머지 두 분께서….

○ 김재홍 상임위원

- 지난번에도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했고 티타임에서 여러 차례 한 것 같습니다. 토론을 최대 한 줄여서 이제는 결론을 낼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지난번에 충분히 밝힌 것처럼 의사는 속행해서 얼른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속개해서….

O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점심을 위해 정회를 하고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1시 반에 이어서 속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고….

○ 최성준 위원장

- 표현이 정확하지 모르겠는데 정회했다가 1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O 김재홍 상임위원

- 오후에 하는 것이 속행이고요.

○ 최성준 위원장

- 날짜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점심시간이어서….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이기주 위원님 의견을 아주 존중하다 보니까 조건부입니다. 저는 크게 문제없다면 논 의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이 자리, 시간이 좀 늦더라도요?

O 고삼석 상임위원

- 예.

○ 허원제 부위원

- 저는 약속이 있기는 한데, 김 위원님 약속 없습니까?

○ 김재홍 상임위원

- 약속이 있는데 기자 분들 몇 분과 한 약속입니다. 그것보다는 여기에서 결정을 빨리 하는 것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토론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혹시 의견이 나올까 봐서,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 해서 저도 빨리 끝날 수 있는지….

○ 김재홍 상임위원

- 저는 다수의견에 따르겠습니다.

O 허원제 부위원장

- 위원장님께서 결정하시지요.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님들 사이에 약속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일단 회의를 정회하고 1 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2시 05분 정회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진행하기 전에 방청인들에게 미리 양해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늦게 1시 정도까지 진행하기도 하여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는 의한 결과, 가능하면 12시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일단 정회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이와 같이 속개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마 방청오신 분들 각자 사정에 따라 계속하는 것이 더 좋으신 분도 있고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는 것이 더 좋으신 분도 있고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는 것이 더 좋으신 분도 있고 아마 사정이 다를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맞춰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고는 다 하셨고, 보고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이용자정책국에 간단히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중간에 '마이올레 홈페이지 웹서비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해서 그 본문 밑에 참고표시로 2010년 당시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서 답변한 것 같은데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구두로 말씀해 주십시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질의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저희에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되지 않은 별도의 웹서버 및 해당 웹서버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이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통위 고시)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질의 내용 문구를 들어보니까 답변이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질의 자체가 '개인정보가 별도로 저장되어 있는'이렇게 물어본 것이라서 확인차 물어봤습니다. 두 번째는 5페이지 중간에서 조금 밑에 박스 안에 '단순한 타인의 개인정보 조회도 해당하는지 여부', 이와 관련해서 세 번째 줄에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볼 때'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경찰의 진술내용을 협조를 받아서 확인한 것인지, 아니면 경찰에서 발표한 보도내용을 가지고이야기한 것인지, 무엇입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일부 내용들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를 통해 저희들이 처음 인지했고, 비공식으로 경찰 관련 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 비공식적으로는 확인이 됐습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다른 기관의 자료를 저희 의결안건에 인용한 것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에 같은 내부 직원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 또는 제3자인 외부사람이 조회를 하는 경우에도 누출이라고 봐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경찰이 진술한 내용을 인용한 것이 조금 어색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처분안에 보면 인과관계가 있어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체를 다 망라한 것인지, 주요한 위반행위만 이야기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64조의3제1항 단서조항에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보기에 따라서는 위반행위가 1건이 있다면 물론 그것을 횟수로 따질 수는 없지만 위반의 유형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1건마다 1억원씩 카운트해야 하는지, 그것을 토털로 해야 하는지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이용자정 책국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요.

O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의견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 것인지….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행위로 인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만 있어도 개인정보 유출이 되면 똑같은 1억원 미만의 과징금이 적용되는데 몇 가지가 있다고 해서 저희는 각각 1억원, 1억원 이렇게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유출된 개인정보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이올레와 올레클럽에서 유출된 개인 정보가 사실상 같은 것입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지금 마이올레 홈페이지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개인정보 관련 올레클럽 홈페이지와 관련

된 부분인데 유출 관련된 경로나 해킹기법은 다르지만 정보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상 해당 조항이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중 접근제한 통제 관련된 위반사항의 여러 가지 항목들로 봤고, 법상으로는 그 조항 하나로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을 적용해서 단일로, 1억원 이하로 과징금 처분하고자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조금 전에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볼 때 그 부분이 아까 비공식적으로는 확인했다는데 이것이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앞에 '권한 없는 자, 또는 권한을 넘어선 단순조회도 누출로 해당되며', 일단 저희들의 판단에 따르면 되는 것인데 또 혹시 그 부분을 다투기 때문에 나아가서 '해커가 조회한 내용을 불법 TM에 활용하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볼 때' 그곳에서 '경찰' 부분을 빼고 '해커가 조회한 내용을 불법TM에 활용까지 하였다고 하므로 개인정보 누출이 확실함' 그냥 그렇게 출처를 굳이 밝히지 않는 것은 어떻습니까? 굳이 저희가 경찰 문서를 직접 본 것은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써 놓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그렇게 해 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찮으시면 그렇게 그 부분은 수정하는 것으로….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것 확인할 것이 있으십니까?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KT 측의 오늘 의견청취 잘 들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매우 중요한 기간통신사업자 로서 그런 일을 겪은 부분에 대해 가슴이 아픕니다만 여러 가지로 그동안 많이 논의됐고, 사회적 책임 때문에 법리적으로 무리한 것을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 관심사가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또 행정처분을 아니할 수 없는 사정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처분이 검찰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거기에 가혹한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매우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검찰수사나 법원과는 독립적으로 방송통신 정책을 수행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것 과는 별개로 행정처분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통신업계의 경쟁환경 판도 변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걱정하는 것은 그 KT 측으 로서는 당연할 것입니다. 저도 그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용자정책국에서 과 징금과 과태료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지지합니다. 하나는 전반적으로 해킹을 당했다 고 하지만 해킹의 기술 수준이 결코 높지 않았고 아주 평범했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책 임을 면할 수 없고, 전반적으로 인증로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은 참 실망스럽고 유 감입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디지털 산업체 기업들이 산업성장과 편의주의 위주로만 성장 해 왔지, 거기에서 생기는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아주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하 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불거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우리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동일선상에 있는 사고·사건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논쟁 쟁점은 마이 올레 홈페이지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답변을 받았다 는 것을 반박자료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답변했던 것과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사 건과는 개념상, 내용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개인정보가 저장된 DB와 구분된 별도의 시스템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이올레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것이 의무 아니겠습니까? 구분된 별도의 시스템으로 마이올레 홈페이지를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마이올레를 통 해서 쉽게 침입해서 개인정보를 누출했고, 매우 광범위한 개인정보가 누출됐기 때문에 이것 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책임뿐만 아니고 인과관계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니 겠습니까? 인증로직 하나만 제대로 갖추었더라면 아무 문제없는 것인데 우리가 조사해 놓은 것, 1일 최대 34만 1,200여 건의 개인정보조회를 했는데 그것을 이상징후로 탐지하지 못했 다,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도 아주 무책임하고 소홀한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와 인권문제에 우리 전반적인 문화가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조사는 전문인들이 한 것인데 그 사실조사 에 바탕해서 차후에는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산업계에서 이런 종류의 사고가 재발되지 않 도록 의미 있는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행정처분 근거로 해서 이용자들, 개인정보 누출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예상되는 것이 매우 걱정된다는 것입니 다. 그러나 법원으로서도, 그렇다고 해서 한 기업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판결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책의지를 가지고 이런 문제가, 이런 사고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 조치를 하는 것이고, 법적인 판결은 최소한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행정처분이 법정에 가서 패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법은 최소한의 도덕입니다. 최소한의 것만 따지는 것입니다. 정책은 사전에 예방, 미연 의 방지, 재발방지 대책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용자정책국의 결론에 지 지하고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다른 것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사실확인이 나 개별 사안에 대한 입장을 지난주에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 번 여쭤 봤습니다만 오늘도 KT에서 나오신 분들이 하나 같이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기업에 책임을 엄격하게 묻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다" 그다음에 "국제적 흐름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내외 자료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는 정부의 책임보다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이용하는 기업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O 고삼석 상임위원

- 이 부분은 저희가 명확히, 물론 저희가 입법도 되어 있기 때문에 KT의 진술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 점을 먼저 분명하게 해놓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11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또한 이러한 기업의 기술적·

관리적 의무조치 위반과 개인정보 유출 간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 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한 저의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검토해서 올린 제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세상이나 인터넷경제는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KT에 보낸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사고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 세상과 인터넷경제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 사고 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비용을 치르더라도 이번 기회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개인과 기업, 그리고 사회적 인식, 문화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래에 더 큰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치를 것이며, 인터넷사회나 인터넷 경제의 미래는 대단히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KT의 고객정보 유출 은 2004년에 92만명 분의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2012년 7월 873만명 분의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 가 봤을 때는 KT의 보안의식 허술과 관리소홀이 그 근본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홍 위 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도의 해킹프로그램에 당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KT가 취약점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개 인정보 유출사고는 KT의 책임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측 불가능했다거나 그 리고 대응 불가능했던 상황은 아닌 것으로, 올린 보고서를 보고 제가 얻은 결론입니다. 그 래서 저는 안건 자료에 적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번 KT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정보통신망 법상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 위반과 개인정보 유출 발생간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올린 그 의견이 적절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법적 근거 때문에 과징금 상 한까지 부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과징금 규모도 만약에 상한으로 할 수 있다면 올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과징금 부과기준에 보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일반 위반행위'가 있는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려면 밑에 각 호 3개에 다 해당되어야 하는데 3개가 해당이 되지 않아서 '중대한 위반행위'로, 저희가 정해준 기준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게됐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물론 제재의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만 제가 사례를 들고 싶은 것은 연초에 1억 4,000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3개의 신용카드사, 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 감독원은 3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최고경영자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단행하도록 요구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KT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이들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비교했을 때도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KT가 국내 최대 ICT 기업이자 글로벌 ICT 기업을 지향하는 그러한 기업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 책임은 더욱 무겁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올레클럽 관련해서 두 번째 계정관리 취약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사용중지된 퇴직자의 ID로 접속했다, 그리고 밑에 퇴직자 ID뿐만 아니라 임의의 다른 ID를 내장해서 사용해도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접속이 가능하다, 이 말을 종합해 보면 결국에는 퇴직자의 ID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제1항에서 말한 것처럼 외부 인터넷망으로 사내망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열어놓아서 꼭 퇴직자 ID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ID라도 그 내부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놓은 자체가 근원적인 잘 못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우선 차례대로 어느 정도 의견을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의견을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이올레 홈페이지가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 항제2호를 위반해서 제64조의3제1항제6호의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 의 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이올레에 관한 부분입니다. 마이올레에 관해서는 정보 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64조의3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편 의상 이렇게 여쭤 보지요. 지금까지 논의된 전체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혹시 의견을 가지신 분 있습니까? 그러면 모두 거기에 해당하는 의견이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올레클럽과 관련해서 올레클럽도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 항제2호와 제64조의3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가지신 분 있습니까? 전부 같은 의견이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여쭤 본 것은 과징금 부과에 관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 부분, 암호화를 하지 않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고된 내용과 달리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그러면 다 같은 의견이신 것으로 알겠습니 다. 지금 행정처분(안)에 의하면 과징금 부과가 조금 전에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억원 이하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KT가 위반행위로 직접적인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징금에 해당하는 7,0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과 관련된 2건 이 있어서 기본 1,000만원에 50% 가중해서 1,500만원을 부과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시정조치 명령과 개선권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 견을 여쭙기 전에 지금 안건에 있는 시정조치 명령에 의하면 KT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서는 아니되며, 위반사항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2014년 7월 25일까지 제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제 개인 생각에는 아마도 이미 이 위반사항에 대해서 일정한 조치는 이루어진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대책을 수립해서 제출토록 하는 것보다는 이미 완료한 조치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완료한 조치 이외에 어떠한 것들을 앞으로 더 해나갈 것인가라는 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O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는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첫날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안 문제, 정보보호, 개인정보 유출 대비는 정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가 그간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에 조치한 것, 앞으로 조치하려고 하는 내용을 보긴 봤는데 이것이 저희들끼리라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이 아주 미니멈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문제는 앞으로 더 재발방지가 가능할지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서 KT 건이 아니고 과연 해킹으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것이 100% 방지가 가능한지, 그러면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만 시정하는 방법이 있고 굉장히 많은, 앞으로의 공격에 대비하는 것까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딱몇 퍼센트 이행을 했다, 시정조치를 했다, 따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차제에 넉넉하게 해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출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위원회에 별도 보고를 합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통상은 위원회에 이행계획 제출한 것을 보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후점검을 나가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만약에 사후점검을 가서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조치를 취합 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러면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시정명령 위반인데 지금까지는 대체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이 되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시정조치 위반으로 하려면 좀 더 명확하게 제가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재발방지 대책을 기존에 이행한 부분 제출하고, 그다음에 향후 이행할 대책을 수립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것, 덧붙여서 그 세워놓은 대책을 언제까지 이행하라는 내용까지 시정조치에들어가 있어야지 나중에 시정조치 위반이라는 개념도 명확해지지 않을까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통상은 시행계획을 제출할 때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언제까지 하겠다고 계획을 냅니다. 사실은 시정조치 계획을 만들면 사전에 저희들과 협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원하는 수준을 담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면 다시 보완하라는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의 지적된 사항들이 들어가서 계획을 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제가 의견을 드린 것은 이미 조치한 것, 앞으로 조치할 것을 보긴 봤는데 다른 사 안과 달리 이번 사건은 제가 누차 말씀 드리지만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 가늠하기가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어려움을 이야기해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번에 방통위로부터 처분을 받게 되면 제가 바라건대 아주 기술적으로 미니멈이 아니고 차제에 대표적인 국내 IT기업으로서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보호 이런 차원에서 종전과는 차원을 달리 하는 수준으로 탈바꿈했으면 하는 기대를 하면서 시정명령 이행이라는 것을 어떻게 가늠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겠다는 정도로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면 이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시정명령이나 이행계획의 사후점검에 대해서는 크게 점검을 안 해 봤다기보다도 조치를 내리고 나면 시정명령 이행여부 점검 이외의 것에 대한 점검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못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문제가 된 해킹수법에 대해서만, 인증절차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에 대비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이행계획서를 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진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만큼 받아도 또 다른 기법이 나오면 또 뚫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희 시정명령에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조치사항과 이행계획서를 제출을 언제까지 하고, 그 제출한이행계획서를 위원회 보고나 또는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에게, 받기 전에 한 번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법 제64조제4항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라고 되어 있어서 법조문을 보면 필요한 시정조치가 구체적인 내용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쪽의 각종 시스템을 모르는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것을 시정조치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쪽에서 결국에는 대책과 이행계획서를 받고 그대로 이행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같습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받고 점검하는 것을 넘어서 낸 계획 자체가….

○ 최성준 위원장

- 저희가 적정한지….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적정한지를 한 번 위원님들과 그래서 범위를 위원님들이 정할 수 있지 않을까….

O 최성준 위원장

- 저희가 시정조치를 보낼 때는 뭐라고 해서 보냅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일단 시정은 여기에서 지적된 것을 시정하라고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과거 잘못된 것에 대한 제재, 행정처분이 1차적으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경험을 해 보니까 사이버 보안이다, 정보보호다, 개인정보 유출이다, 이런 것은 사실 앞으로가 더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이런 통신회사들이 많은 가입자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번 이야기해 보면 물론 저는 KT가 이번 일로 인해서 과거보다 더 많은 획기적인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는 하지만 이 계획을 제출받았을 때, 처음에 사고 났을 때 민간합동조사단에 참여했던 방통위 직원 조사관들 말고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민간의 전문가들 중 참여한 분들이 그것이 무슨 법적으로 그런 것은 없지만, 그 사람들이 한 번 리뷰를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개인정보보호관리 체계(PIMS)라는 것이 법적인 제도로는 되어 있지만 그것이 의무화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대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들의 많은 경우가 PIMS 인증을 아직 안 받고 있는데 PIMS 인증제도의 활성화도 차제에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시정조치 명령하는 것은 다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요금 명세조회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과다한 개인정보가 전송된 것과 그다음에 주요 개인정보를 마킹처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규정이 없어서 개선권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을 종합해서 종합의견은 KT에 대해서 과징금 7,000만원 그다음에 과태료 1,500만원 그리고 시정조치 명령, 개선권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잠깐 의견입니다. 여기에 계에 8,500만원이라는 것….

○ 최성준 위원장

- 이것은 이상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삭제하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과태료와 과징금은 전혀 제도가 다른 것인데 8,500만원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숫자라고 봅니다.

- 그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습니다.

8.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습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하나만 말씀 드리면 이에 따라서 나중에 법정피해 배상절차가 진행될 텐데 KT에서 오늘 제출한 종합대책 및 건의사항 2페이지를 보면 고객에 대한 도의적 책임 이행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 이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용자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 준다거나 복구, 쉽게 말하면 법적으로 향후에 배상 받으려면 배상 받아라, 이런 정도 같은데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시정명령과 다른 차원이고, 왜냐하면 시정명령은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시정명령인 것 같습니다. 이용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법적으로 집단소송 제도를 이용한다하더라도 소송을 980만명이 다 소송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자기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구제나 원상복구, 이런 것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합니까? 이것은 사업자들이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규제기관이 좀 더 가이드를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그 부분에서 이용자정책국에서 답변하십시오. 제 의견을 말씀 드리면 저희가 오늘 행정처분 (안)을 의결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범위 내에서 한 것이고, 지금 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정보통신망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KT 측에서 추가적인 의견진술을 했지만 위원님들이 쭉 논의해서 그것과 상관없이 저희가 그동안 논의된 것을 토대로 오늘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형태로든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용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망법에서 해당 당사자들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이런 항목이 유출됐다는 것을 통지해준바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저희가 다른 특별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징금, 과태료, 시정조치 등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고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국에 개인정보가 누출된 각 개개인의 피해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굉장히 번거로운 소송절차이기는 하지만 당사자 간의 소송절

차가 남아있는데 행정기관이 그 소송절차에 앞서서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행위여서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소송절차가 좀 더간편화돼서 집단소송의 방법에 의한 것은 별도로 이용자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법률적으로 KT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론으로는 논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현행법의 테두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논의사항 없으십니까?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지난 KBS 파업사태와 방송파행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그에 따 라서 제출된 자료를 보고받았습니다. 하나는 파업 참여한 현황이고, 하나는 파업 이전과 이 후의 방송차질 현황입니다. 짧게 말씀 드리면 파업 참여 현황에 대해서도 아주 피상적인 일 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KBS1·2 노조 가입자가 전사원의 86.7%인데 파업 참여자수를 집계한 것을 보면 아주 미미한 12.3%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사부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일 것입니다. 중 요한 것은 방송 차질 현황입니다. 이것을 차후에 방송평가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 드 리지 않을 수 없고, 나중에 재허가 심사 때 반영하기 위해서도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됩니다. 예를 들면 KBS1TV는 방송 차질에 대해서 10일 동안, 총 방송시간 25,765분이다, 그런데 양적으로 편성 변경과 재방송으로 대체한 시간이 4,685분, 3,405분 해서 합하면 31% 다, 이것은 아주 양적인 통계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보도와 시사·교양과 드 라마, 예능이 있는데 시사, 교양, 드라마, 예능은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도가 문제 이지요. 가장 중시한다고 할까, 시청자들의 관심사인 메인 뉴스입니다. 매일 밤 9시 뉴스입 니다. 60분짜리가 20분으로 축소방송됐고, 정오 낮뉴스 12시 뉴스 60분짜리가 5분으로 축소 방송됐고, 또 저녁 7시 뉴스, 30분짜리가 10분으로 축소방송된 것입니다. 아침뉴스, 다 결방 된 것입니다. 이런 중요성과 의미와 질적 평가가 중요한데 KBS에서 보내온 자료는 이렇게 양적인 통계로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방송기반국 편성평가정책과나 관련된 곳에서는 자료를 분석하고 재정리해서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시청자와 국민들의 입장에서 중요한 의미 있 는 질적인 평가로 재정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 자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평가 또 앞으로 재허가 시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가와 재허가에 반영하기 위해 적정하게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논의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 날짜는 7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이상으로 제24차 방송통신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4시 20분 폐회 】